

화평법과 화관법의 적용 안내

—자진신고 제도를 중심으로—

Guide on the Application of the Chemical Substances Management Act
and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Materials

I. 서론

우리 협회 회원사가 화평법·화관법에 대한 대응이 부진하거나 대응방법을 모르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전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당면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의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하며 신속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II. 화평법, 화관법 제정 배경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하 화평법)으로, 화학물질은 어떻게 등록하고 평가하는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약칭(이하 화관법)으로 위 화평법에서 등록하고 평가한 화학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라는 내용으로 크게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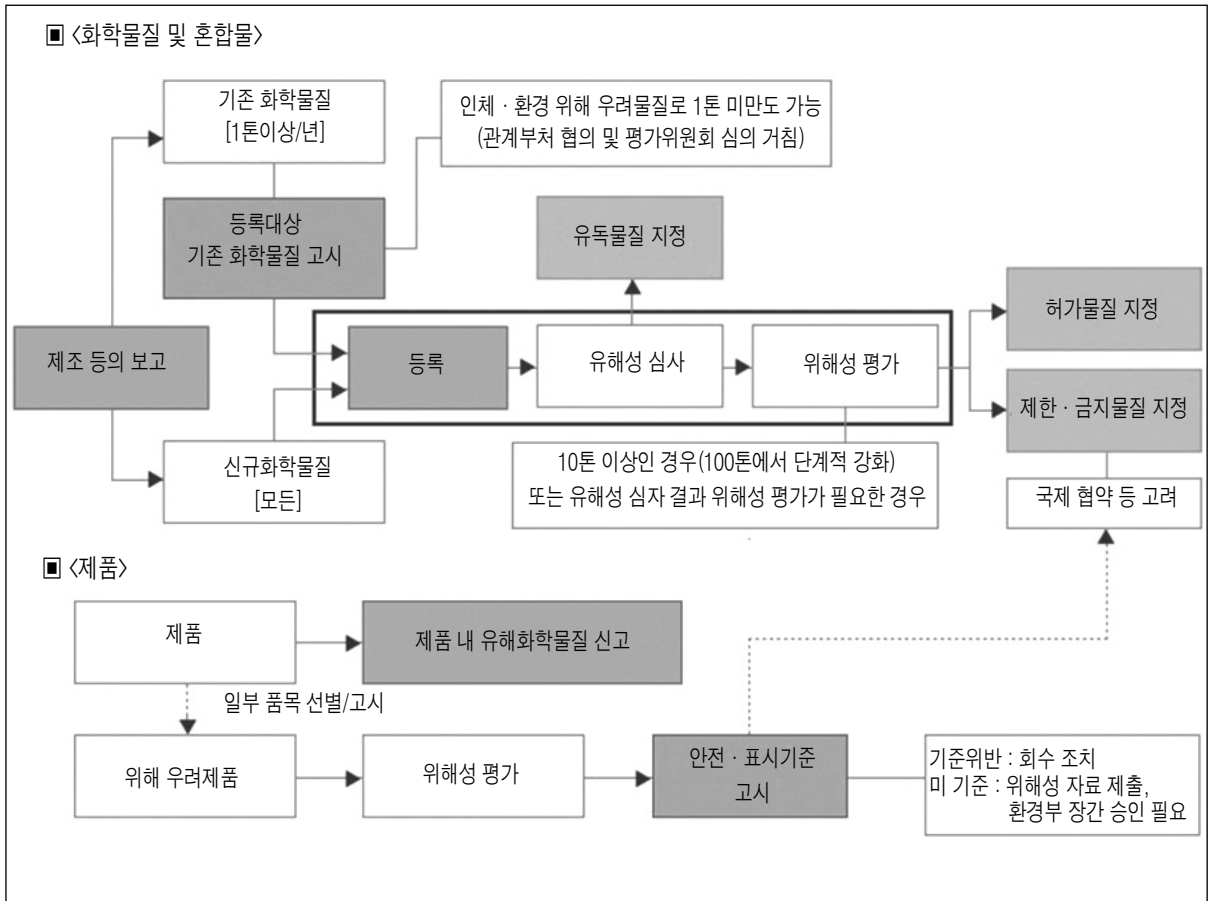
이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이 기폭제가 되어 구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대폭 개정해 ‘화관법’을 만들고 유럽의 리치(REACH) 제도를 한국형으로 도입하여 ‘화평법’을 만들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III. 화평법 개요

화평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5장 화학물질 정보제공, 제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와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우리 협회 회원사들에게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부분이다.

회원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등록하는 경우보다 사용물질을 수입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해당될 것이

[그림 1] 화평법의 주요 업무흐름도



(자료 출처 :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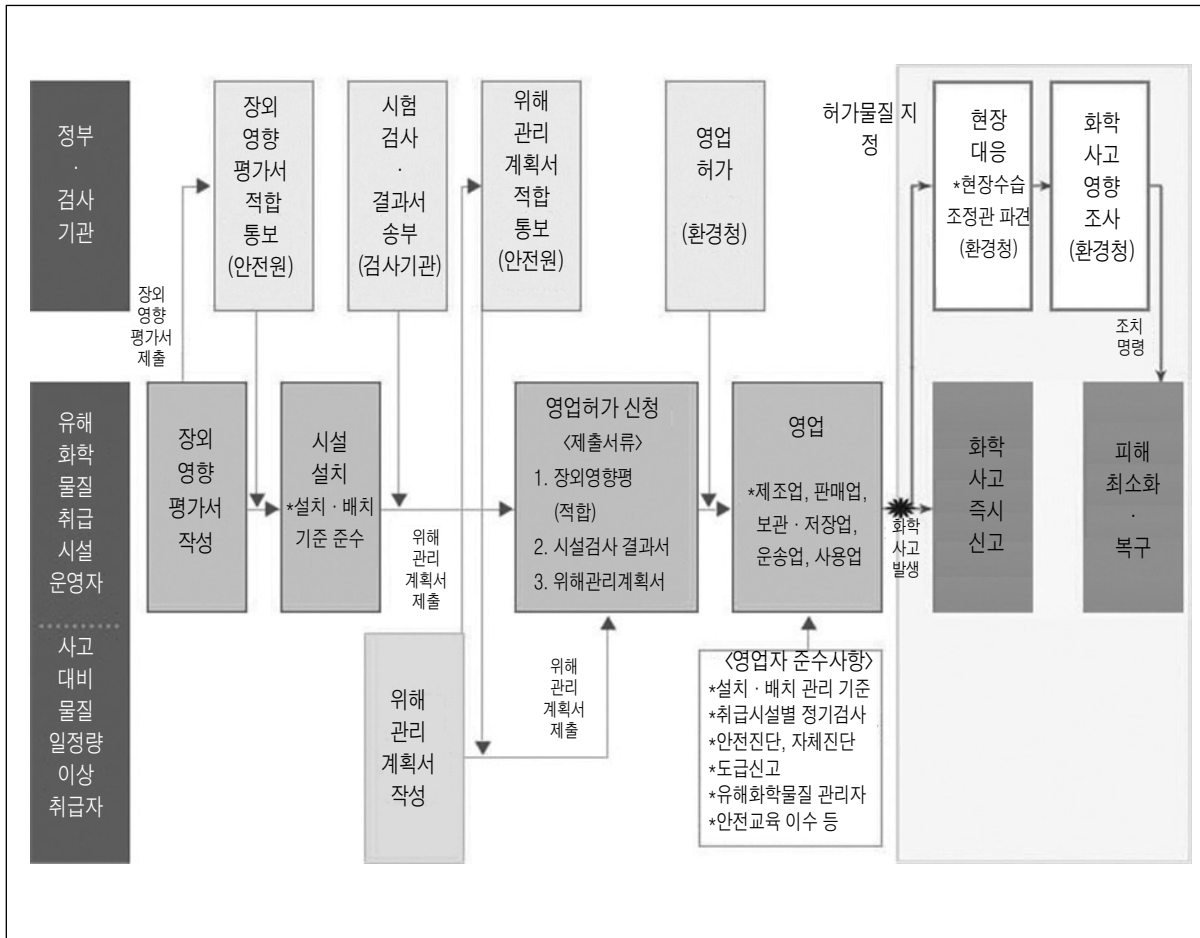
므로 화관법의 수입신고 부분에서 다시 안내한다.

화평법은 현재도 계속 개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 중인 법규로 대상물질의 수량기준, 허가 및 신고절차 등을 계속 현실화하여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개정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는 ①위해우려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돼 본 법에서 삭제되고, ②화학물질의 등록(제10조)제도를 신규화학물질 연간 100kg 이상은 등록제도로 하되, 100kg 미만은 신고제도로 개정하여 등록조건을 완화하였으며, ③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제32조) 대상을 중점 함유물질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이면 함유량(%)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되던 것을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신고대상 물질의 함유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화평법의 주요 업무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2] 화관법 주요 관리체계(관계기관별 규제흐름)



(자료 출처 : 화평법 화관법 산업계도움센터(<http://www.chemnavi.or.kr/>))

IV. 화관법 개요

화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5장 화학사고 대비 대응,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회원사들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가 될 것이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①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제13조), ②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제17조~제21조), ③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제23조), ④취급시설 설치검사(제24조~제26조), ⑤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27조~제30조), ⑥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제31조), ⑦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제32조~제33조) 및 ⑧사고대비물질 위험관리계획서 작성제출(제40조~제42조) 등이 될 것이다.

[표 1] 자진신고 대상 및 신고요령

<p>1.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2018년 5월 21일(6개월)</p> <p>2. 자진신고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p>3. 신고요령</p> <p>가. 신고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나. 신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과거 제조·수입·영업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호 또는 제29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제출하여야 함. 비영업자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p>4. 자진신고자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정상 참작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적발된 사업장이 확인명세서를 추후 제출한 경우 화관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2]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 금액의 1/2 감경 조치 ** 위해관리계획서 미제출 사업장 중 벌칙면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영업(변경)허가 자진신고자에 한함. 아울러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유해화학물질 유·누출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이번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됨. <p>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 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 적용
--

(자료 출처 : 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법무부 공고 제2017-301호)

V. 자진신고제도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을 정하여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위반사항은 위반에 따른 벌칙 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여 주되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 분석,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고 환경부장관 법무부장관과 연서로 발표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과 신고요령은 [표 1]과 같다.

가. 화학물질확인

1. 질문내용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실적이 있으나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4. 신고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1. 질문내용	유독물질을 수입한 실적이 있으나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다. 제한물질 수입(변경) 허가 및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1. 질문내용	제한물질 수입(변경) 및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실적이 있으나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제한물질 수입(변경) 및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 허가신청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규)

1. 질문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 보관, 제조, 판매)실적이 있으나 화관법 제 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1. 유독물질이면서 동시에 사고대비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상 사용 2.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대상이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1. 질문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 보관, 제조, 판매)허가사항 변경이 있으나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았다. 1.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 추가 4.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어 영향범위 확대 5.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 신청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신고)

1. 질문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사용, 보관, 제조, 판매)허가사항 변경이 있으나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1. 사업장의 평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2. 시장출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시범생산용 60일 이내) 3. 장외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평가정보의 변경 4.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용량의 변화가 없는 운반차량의 변경(종류, 대수, 용량 등)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신고) 신청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Special Report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하고 있으나 법 제3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하고 있으나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자.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폐업·휴업하였으나 법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폐업·휴업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차. 유해화학물질 권리·의무 승계 신고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권리·의무 승계실적이 있으나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권리·의무 승계 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법 제33조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안전교육 실시
4. 신고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검사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설치, 정기검사 수검 및 결과보고
4. 신고기관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보고 :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파. 시약 판매업 신고

1. 질문내용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나 법 제29조의 3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답변내용	예(), 아니오() 질문의 답이 예(√) 인 경우 3.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신고대상	자진신고 후 시약 판매업 신고
4. 신고기관	유역환경청(화학안전관리단)

이상 가~파항 자진신고 설문내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해당 신고기관에서 지정한 자진신고서(서식)에 따라 자진신고 이후의 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한 조치계획은 2019년 5월 21일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세부내용은 해당 신고기관 자진신고 안내자료 참조).

(표 2) 화관법 경과조치 요약

<p>1. 「유해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법 부칙 제2조, 제3조, 제4조) ⇒ 「화관법」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허가,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추가 갱신·교부 필요)</p> <p>2.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영업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 부칙 제5조) ⇒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p> <p>3. 「화관법」 시행 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법 부칙 제6조) ⇒ 유예기간 내 도급신고</p> <p>4.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법 부칙 제7조) ⇒ 유예기간 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p> <p>5. 「유해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법 부칙 제8조) ⇒ 유예기간 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p> <p>6.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제출 경과조치(시행규칙 부칙 제6조)</p> <p>가. 안전성향상계획(SNS) 제출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p> <p>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자 중 대표업종 운영자 : 2015년 12월 31일</p> <p>다.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자 중 1,000톤/년 이상 취급자 : 2016년 12월 31일</p> <p>라.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자 중 1,000톤/년 미만 취급자 : 2017년 12월 31일</p> <p>마. 제1호~제4호 해당 아닌 자로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 2018년 12월 31일</p> <p>바. 제1호~제4호 해당 아닌 자로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 2019년 12월 31일</p> <p>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경과조치(시행규칙 부칙 제7조)</p> <p>가. 안전성향상계획(SNS) 제출대상자 : 2015년 12월 31일</p> <p>나.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자 중 대표업종운영자 : 2015년 12월 31일</p> <p>다. 제2호 해당 아닌 자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자 : 2016년 12월 31일</p> <p>라. 제1호~제3호 해당 아닌 자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자 : 2017년 12월 31일</p>


VII.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 중에서 가장 벌칙제도가 강한 법은 바로 화관법이다. 화관법 제58조(벌칙) 제4호에 따르면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유독물질이면서 동시에 사고대비물질인 유해화학물질(예, 염산, 황산, 톨루엔,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에틸아세테이트 등) 연간 100kg 이상 사용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무거운 벌칙조항이 있는 화관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경우

도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를 양성화시키고 벌칙을 면제받게 하려고 실행하는 자진신고 기한인 2018년 5월 21일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우리 협회 회원사들마저도 이에 대한 적합한 대응을 제때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협회 연포장분과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조찬회 모임에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진신고에 대한 안내와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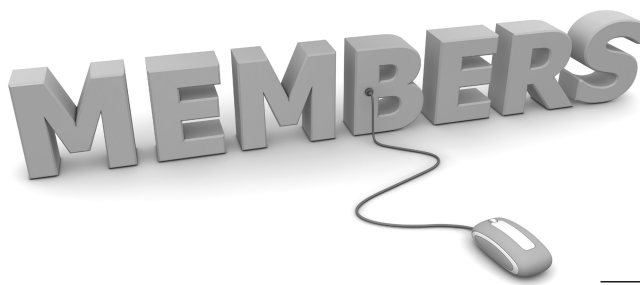
글의 마지막 부분에 회원사들이 직접 체크할 수 있는 간편 설문서를 첨부하였다. 회원사가 화관법 자진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조치되길 기대한다. 

[첨부 1] 화관법 준수여부 확인 간편 설문지

1. 우리 회사는 톨루엔, 메탄올, MEK, EA 등의 용제를 1년에 100kg 이상 사용하고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영업허가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받지 않은 것이 있다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결론 : 위 1~2번 문항 모두에 ① 예(V)에 체크 되었다면 지금 화관법을 위반하여 징역 5년, 벌금 1억의 벌칙조항에 해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속히 확인하시고 한국포장협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 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